

2021년 제3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2021년 제3회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
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4월 9일

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관련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, 제21조의3 등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5조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
2.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담당직무 내용
임산부·영아 방문 건강관리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(8급상당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임산부·영아가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● 임산부·영아가정 방문 건강상담● 산모우울 등 고위험가구 건강관리 지원
방송·음향	일반임기제 9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각종 회의 및 행사 방송 지원● 본청, 산하기관 방송음향시설 관리운영● 마을방송 설치 및 유지관리

3. 임용기간

- 임산부·영아 방문 건강관리: 임용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
 - 방송·음향: 임용일로부터 2년
- ※ 실적 및 필요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가능

4. 응시자격 요건

● 일반요건(공통사항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연령: 18세 이상

《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》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관한 사람을 포함한다.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.

〈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〉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● 자격요건 【적용기준일: 원서접수마감일】

-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

채용분야	임 용 자 격
임산부·영아 방문 건강관리	<p>간호사 면허 소지자 ※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- 경상남도 고성군에 주소를 가진자
방송·음향	<p>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: 방송, 음향 ※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대음향 관련 자격증 소지자 - 경상남도 고성군에 주소를 가진자

- ※ 실무경력 중 전일근무(1일 8시간)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(예시: 주 20시간)
- ※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10년)

5. 보수 및 복무

● (연봉책정)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

(단위: 천원)

구분	상한액	하한액	연봉액	비고
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	54,984	39,222	34,319	하한액*35/40(h)
일반임기제 9급	48,415		29,049	상한액*0.6

- * 임용예정자의 경력 등에 따라 임용 약정시 확정
- (수 당)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
 -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시간외근무수당 등
- (근무시간) 주 35시간(1일 7시간)
 - * 점심시간(1시간)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,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(조기출근, 야간근무 등) 및 주말·휴일 근무 필요

- (복 무)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성군공무원 복무조례 적용
-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시 가능 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

6. 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

● 시험일정

공고	응시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 일자(예정)	최종합격자 '발표(예정)
'21.04.09.(금) ~ '21.04.20.(화)	'21. 04. 9.(월) ~ 04. 21.(수) ※ 기간 중 업무시간 내 (09:00~18:00)	'21. 04. 23(금)	'21. 04. 29.(목)	'21. 04. 30.(금)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예정임.

● 시험방법

• 1차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 전형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함
※ 재공고시 1차 서류전형 응시자는 접수한 것으로 간주

• 2차 면접시험: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
-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, 인성,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
- 면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7. 제출서류

● 응시원서 1부 (붙임서식)
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(3.5cm×4.5cm) 1매 별도제출
- 응시수수료: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 내 인증기 수납
 - 공통: 7,000원

● 이력서 1부 (붙임서식)

-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

● 자기소개서 1부 (붙임서식, A4 2매 내외로 자유작성)

-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붙임서식, A4 3매 내외로 자유작성)
-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(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분부터 인정)
 - 당해분야의 근무처, 재직기간, 직위(직급)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
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(연락처 포함)이 있어야 함
 -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증·허가증 등 기관성격을
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-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
-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원본) 1부
 -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붙임서식)
-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
-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 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
-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
 -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할 것

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: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으로 작성
- 접수처: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(본관 4층), ☎ 055-670-2093
우)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
- 접수방법: 직접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
 - 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

9. 합격자 결정

-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(상·중·하의 평정점 중 상의 개수가 많은자, 동률일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)를 합격자로 결정

평정 요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•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•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
● 불합격 처리 기준

-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

10. 기타(유의) 사항

-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요청 시 반환합니다.(최종합격자 제외)
※ 반환방법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등기우편을 이용하며,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.
- 응시서류의 착오 기재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면접시험 장소 및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추가 합격자 결정
 -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
 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- 문의처
 - 직무관련(임산부·영아 방문건강관리): 보건소 건강지원담당 ☎ 055-670-4052
 - 직무관련(방송·음향):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☎ 055-670-2122
 - 채용관련: 행정복지국 행정과 인사담당 ☎ 055-670-2093